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1999. 9. 20.  
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년 9월 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1999년 9월 11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66회(임시회) 제1차 위원회 (1999년 9월 13일 상정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김종박)

### 가. 개정사유

- 중앙정부의 행정개혁방침 및 행정자치부 제2단계 구조조정지침에 의거 우리구 행정조직중 기구감축 및 조정을 통하여 작지만 생산성이 높은 자치행정을 구현하여 구민에게 저비용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코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◎ 구본청 기구를 23과에서 21과로 감축하며,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1)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서 조정
  - 재무국 지적과 ⇒ 도시관리국 지적과
  - 생활복지국 위생과 ⇒ 보건소(보건행정과)로 통합
- 2) 업무의 합리적 재편을 위한 민방위재난관리과 폐지
  - 재난관리과 업무 ⇒ 치수과
  - 민방위 및 비상계획 업무 ⇒ 총무과
  - 안전지도 업무 ⇒ 감사담당관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송성만)

동 조례(안)은 정부의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지침에 따른 행정기구의 감축개편으로서 2개 과를 축소하여야 함에 따라 업무의 성질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검토한 바,

- 공중위생법, 식품위생법, 지역보건법 등의 유사업무 성격으로 보아 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통합하고,
-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기능분산에 따른 업무 재배분을 통하여 폐지하여 재난관리업무는 종합적인 방재부서인 치수과로, 민방위 및 비상계획업무는 총무과로, 안전지도업무는 예방 및 지도부서인 감사담당관으로 분산 재편하고, 재무국 지적과는 조직운영의 균형 유지와 합리화를 위하여 도시관리국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타구의 개편현황을 비교 검토한 바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.

## 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8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9. 9.  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개정사유

중앙 정부의 행정개혁방침 및 행정자치부 제2단계 구조조정지침에 의거 우리구 행정조직중 기구감축 및 조정을 통하여 작지만 생산성이 높은 자치행정을 구현하여 구민에게 저비용,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코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⇒ 구분청 기구를 23과에서 21과로 감축하며,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가.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서 조정
  - 재무국 지적과 ⇒ 도시관리국 지적과
  - 생활복지국 위생과 ⇒ 보건소(보건행정과)로 통합
- 나. 업무의 합리적 재편을 위한 민방위재난관리과 폐지
  - 재난관리 업무 ⇒ 치수과
  - 민방위 및 비상계획 업무 ⇒ 총무과
  - 안전지도 업무 ⇒ 감사담당관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근거
  -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
  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
  - 자치구 도로 등 시설물관리 이관인력 감축 → 조직 12115-426('99. 5. 13)호
  - 2단계 지방구조조정추진지침 : 조직 12200-511('99. 6. 15)
- 나. 합의 사항 : 합의되었음.
- 다. 예산조치사항 : 해당 없음.

마로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·보좌기관의 설치)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.

제5조 제2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호 민방위 기본계획 수립, 민방위대 편성, 훈련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

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2항 제5호, 제6호를 삭제한다.

①재무국에 재무과, 세무관리과 및 부과과를 둔다.

제7조 제1항중 “위생과”를 삭제하고, 제2항 제5호를 삭제하며, 제6호 내지 제14조를 제5호 내지 제13조로 한다.

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2항 제7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제9호를 삭제한다.

①도시관리국에 도시관리과, 건축과, 지적과 및 공원녹지과를 둔다.

②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제7호 토지관리, 토지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

제8호 건축물관리에 관한 사항

제9조 제2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호 종합방재계획 수립, 재난예방 및 복구대책,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행정기구의 폐지 및 통·폐합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)

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중 “재무국 지적과”를 “도시관리국 지적과”로 보고, “생활복지국 위생과”를 “보건소(보건행정과)”로 통합한 것으로 보며,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함에 있어 분야별 업무중 “재난관리업무”는 “치수과”로, “민방위 및 비상계획업무”는 “총무과”로 “안전지도업무”는 “감사담당관”으로 보며, “민방위재난관리과장”은 “해당 분야별 업무과장”으로 본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(안)
제4조(감사담당관)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두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1.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. 감사·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·처리 3.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	제4조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·보좌기관의 설치)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.	(삭 제)	(삭 제)

현행	개정(안)
<p>제5조(행정관리국) ①행정관리국에 총무과, 기획예산과, 민원봉사과, 문화체육과 및 여권과를 둔다. ②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~18. (생략)  (신설)</p>	<p>제5조(행정관리국) ①(현행과 같음)  ②(현행과 같음) 1~18. (현행과 같음) 19. 민방위기본계획 수립, 민방위대 편성, 훈련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</p>
<p>제6조(재무국) ①재무국에 재무과, 세무관리과, 부과과 및 지적과를 둔다. ②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~4. (생략) 5. 토지관리·토지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6.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</p>	<p>제6조(재무국) ①재무국에 재무과, 세무관리과, 및 부과과를 둔다. ②(현행과 같음) 1~4. (현행과 같음) (삭제) (삭제)</p>
<p>제7조(생활복지국) ①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, 위생과, 지역경제과, 환경관리과 및 청소행정과를 둔다. ②생활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~4. (생략) 5. 보건 및 위생에 관한 사항 6~14. (생략)</p>	<p>제7조(생활복지국) ①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, 지역경제과, 환경관리과 및 청소행정과를 둔다. ②(현행과 같음) 1~4. (현행과 같음) (삭제) 5~13. (현행 제6호~제14호와 같음)</p>
<p>제8조(도시관리국) ①도시관리국에 도시관리과, 건축과, 공원녹지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.  ②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~6. (생략) 7. 종합방재계획 수립, 재난예방 및 복구대책,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8. 민방위기본계획 수립, 민방위대 편성, 훈련에 관한 사항 9. 가스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</p>	<p>제8조(도시관리국) ①도시관리국에 도시관리과, 건축과, 지적과 및 공원녹지과를 둔다.  ②(현행과 같음) 1~6. (현행과 같음) 7. 토지관리, 토지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8. 건축물관리에 관한 사항 (삭제)</p>
<p>제9조(건설교통국) ①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, 토목과, 치수과,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를 둔다. ②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~18. (생략)  (신설)</p>	<p>제9조(건설교통국) ①(현행과 같음)  ②(현행과 같음) 1~18. (현행과 같음) 19. 종합방재계획 수립, 재난예방 및 복구대책,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</p>